중앙대학교ROTC자문위원회 회칙

[2022. 5. 13 제정]

[2023. 2. 8 개정]

제 1 장 총 칙

- 제1조(명칭) 본회는 중앙대학교ROTC총동문회 회장을 역임한 동문들의 모임으로 공식명칭은 "중앙대학교ROTC자문위원회"라 하며, 통상 "자문위원회"로 호칭 한다.
- 제2조(목적) 본회는 중앙대학교ROTC총동문회 발전을 지원하고, 역대 동문회장 상호간의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며, 나아가 모교의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- 제3조(소재지) 본회의 사무소는 당해년도 선임된 위원장의 사무실에 두며, 필요시 모교ROTC 총동문회 사무실에 둘 수 있다.
- 제4조(사업) 본회는 제2조의 목적달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할 수 있다.
 - 1. 총동문회 자문 활동 및 지원
 - 2. 자문회원간 친목 활동
 - 3. 자문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업
 - 4. 기타사업

제 2 장 회 원

제5조(자격) 본회는 모교ROTC총동문회 회장 임무를 마친 동문으로 구성한다.

제6조(회원의무)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.

- 1. 회원으로서의 역할과 품위를 보전 할 의무
- 2. 회칙을 준수 할 의무
- 3. 회비 등을 납부 할 의무

제 3 장 임 원

제7조(임원) 본회는 위원장 1인, 부위원장 1인, 간사 1인 등 3인으로 구성한다.

제8조(임원의 선임)

- 1.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매년 11월 정기총회에서 선임하며 간사는 전년도 총동문회장이 당연직 간사가 된다.
- 2. 부위원장은 다음년도 위원장 직무를 수행한다.
- 3. 위원장, 부위원장, 간사의 임기는 1년으로 정하고,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1회 연임이 가능하다.

제9조(임원의 직무)

- 1. 위원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.
- 2.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 회무를 대행하되,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- 3. 간사는 위원장의 전반적인 회무를 보좌하며 본회 제반업무를 집행한다.

제 4 장 총 회

제10조(회의) 회의는 분기 1회로 2월, 5월, 8월, 11월 4회로 하며 해당 월 첫째주 수요일로 정하고 11월은 정기총회로 개최한다. 단, 필요시 위원장은 추가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.

제 5 장 회 계

제11조(회비) 회비는 연회비로 위원장기수를 기준으로 상위기수는 10만원, 위원장포함 하위기수는 20만원으로 한다.

제12조(회비지출) 회비 지출은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간사가 집행한다.

제13조(의결) 모든 회의 의결은 참석 자문위원의 2/3 찬성으로 의결 한다.

제14조(회계년도) 본회의 회계연도는 당해연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제 6 장 부 칙

제1조(시행일) 본 회칙은 2022년 5월 13일 제정 시행한다.

제2조(개정) 본 회칙은 2023년 2월 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